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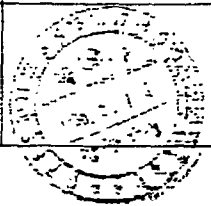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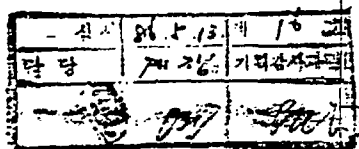
기안용지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목 30520-20819 (전화: 478-0546)		시행상 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 10. ⑤ 3. 1.	장
수신처 보존기간	92년	시
시행일자	86. 5.	장
부서	도시계획국	문서통제
부서장	김기환	
건설국장	김기환	
도목과장	김기환	
기안책임자	도목 김기환	
경유	국안참조	발신명의
수신처		
함		
제 목	도시계획 사업 (하수도) 실시 계획 변경 인가	
제 1 안	86.5.14 86.5.31	
수신 : 내부결재		
제목 : 같은 건		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호 (85.1.15)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3호 (85.2.18)로 지적고시된 서울특별시 고시제 829호 (85.12.10)로 실시 계획 인가된 고덕천 본류 하수관로 시설 공사에 대하여		
2. 일부 토지가 분할되는 등 타된 토지가 있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27조의 2 제 3항 제 1호에 의거 경미한 변경으로 공람 공고를 생략하고 도시		
계획법 제 25조 및 제 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 및 제 27조 규정에 의거		

원본 대조

원본은 강동구청 도목과에 보관함

외로 도목기원보 정공증



변경인가 하크 고시코자 합니다.

첨부 : 1) 고서문 1 부.

2) ~~관개도~~  부. 끝.

제 2. 안

수신 : 서울특별시청

참조 : 하수과장

제목 : 같은 건

1. 우미구에서 시행중인 고덕천 본류하수관로 시설 공사에 따른 실시

계획 변경 인가를 별첨과 같이 시행 하엿기 보고합니다.

첨부 : 1) 고서안 사본 1 부.

2) ~~관개도~~  부. 끝.

제 3. 안

수신 : 건설부장관

발신 : 서울특별시청

제목 : 같은 건

1. 우천시 강동구 고덕천 본류하수관로 시설 공사에 따른 실시 계획

변경 인가를 별첨과 같이 인가 하엿기 보고합니다.

첨부 : 1) 고서안 사본 1 부.

2) ~~관개도~~  부. 끝.



제 4 안	
수신 : 총무처장관	발신 : 서울특별시시장
제목 : 관보 게재 의뢰	
1. 다음 과 같이 관보 게재 의뢰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가. 관보 게재구분 : 고시	변경
나. 관고 게재건명 : 도시계획 사업(하수도)실시계획인가	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 26조	
첨부 : 조서안 사본 2부. 끝.	
제 5 안	
수신 : 서울특별시시장	
참조 : 시권광장	
제목 : 시장관인 날인 의뢰	
1. 도시계획 사업(하수도)실시계획 변경 인가에 따른 공문을 시행 코자 하오니 시장관인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첨부 : 총무처, 건설부 시행공문 각 1부. 끝.	
제 6 안 (폐지함)	
수신 : 서울특별시시장	
참조 : 공보관	
제목 : 시보 게재 의뢰	
1. 다음 과 같이 시보 게재 의뢰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가. 시보 게재 구분 : 고시	
나. 시보 게재 건명 :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	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 26조	
첨부 : 고시안 사본 2부. 끝.	
제 7 안	
수신 : 건설관리과장, 도시정비과장	발신 : 도록과장

제목 : 같은 건

1. 관내 고덕천 본류하수관로 시설공사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실시  
계획 변경 인가를 별첨과 같이 시행 하였던지 통보 하오나 업무에 참고 하시기  
바랍니다.

첨부 : 1) 고시안 사본 1 부.

2) ~~관계~~ 1 부. 공.



고 시 안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도시계획 사업 실시 계획 변경 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829호 (85.12.10)로 실시계획인가된 강동구 고덕천 분류하수관로 시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 도시 계획법 제 25조 및 제 2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.

2. 관계 도서는 강동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도시조 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6. 4.

서울특별시 장

1. 사업 시행지의 위치 : 강동구 고덕동 366-하일동 395일터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고덕천 분류하수관로 시설공사

3. 사업의 규모 : 하수도 신설  $B=2^m$   $L=2,250^m$

4. 사업 시행자 : 서울특별시 장

5. 사업의 좌수, 준공 예정월일 : 변경인가일로 부칙 2년

6. 수용토는 사용합토지, 건물의 소재지, 지적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: 별 첨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관계인 의 주소, 성명 : 별 첨

토지조사

대		소		소		소		소		비고
물	지	지적	면적	주소	성명	주소	지적	면적	주소	비고
			(㎡)					(㎡)		
하임동 589-1	단	1,088	도봉구 미아동 산 38	이승민	하임동 589-1	단	2	도봉구 미아동 산 38	이승민	
" 589-1	단	1,505	"	"	" 589-2	단	12	"	"	
" 585-1	단	1,701	"	"	" 589-3	단	1,074	"	"	
" 584-3	단	1,051	"	"	" 586-1	단	208	"	"	
" 584-2	단	1,729	하임동 362	소경부	" 586-2	단	30	"	"	
" 580-2	단	979	강동구 성내동 53-8	최규정	" 586-3	단	1,267	"	"	
" 580-4	단	1,607	강동구 성내동 53-8	"	" 585-1	단	1,599	"	"	
					" 585-2	단	36	"	"	
					" 585-3	단	72	"	"	
					" 584-3	단	864	"	"	
					" 584-7	단	48	"	"	
					" 584-8	단	139	"	"	
					" 584-2	단	129	강동구 하임동 362	소경부	
					" 584-5	단	49	"	"	
					" 584-6	단	1,551	"	"	
					" 580-2	단	979	강동구 성내동 53-8	최규정	
					" 580-4	단	1,607	"	"	
하임동 520-1	단	1,541	강동구 하임동 371	이철순	" 520-1	단	1,278	강동구 하임동 371	이철순	
					" 520-2	단	61	"	"	
					" 520-3	단	202	"	"	
고덕동 89-7	구	406	성동구 광장동 산 21 위커피(아) 33-702	박만승	고덕동 89-7	구	333	성동구 광장동 산 21 위커피(아) 33-702	박만승	
					" 89-12	구	16	"	"	
					" 89-13	구	257	"	"	
하임동 592-2	단	3,101	도봉구 미아동 산 38	이승민	하임동 592-2	단	1,407	도봉구 미아동 산 38	이승민	
" 591	단	1,180	"	"	" 592-3	단	111	"	"	
" 590	단	2,017	"	"	" 592-4	단	1,583	"	"	
					" 591	단	1,020	"	"	
					" 591-1	단	30	"	"	
					" 591-2	단	130	"	"	
					" 590	단	906	"	"	
					" 590-1	단	109	"	"	
					" 590-2	단	1,002	"	"	
하임동 247-1	단	1,753	강동구 성내동 206	오창균	" 247-1	단	1,630	강동구 성내동 206	오창균	
					" 247-2	단	48	"	"	
					" 247-3	단	75	"	"	
					고덕동 40-7	단	20	강동구 잠실동 22번지 (아) 220-507	하현택	
					" 43-11	단	10	강동구 천호동 27-23	이경순	
					" 40-8	단	79	강동구 잠실동 22번지 219-103	이경순	
					" 43-12	단	7	강남구 역삼동 896-25	최중봉	
					" 43-10	단	400	마포구 서교동 473-34	노명진	
					" 43-1	단	20	강남구 역삼동 896-25	최중봉	
					" 42-1	단	13	강동구 천호동 397-70	한원우	
					" 355-4	단	144	영산구 이촌동 302-86	김정희	
					" 723	단	1,845	도봉구 쌍문동 85-101	이화경	
					하임동 498-6	단	507	강동구 성내동 62-2	이귀환	
					" 500-6	단	3,452	"	"	
					고덕동 89-9	단	519	강동구 고덕동 499	이수석	
					" 89-11	단	728	"	"	

(제2안)	고	시 (안)	시 1986.5.6 149 호
서울특별시 고시 제	호		관 관
남대문구역제2지구 재개발사업 시행 변경 인가			관 관
서울특별시 고시제628호(84.11.1) 및 동고시제878호(85.12.24)			
로 사업 시행 인가 및 변경 인가된 남대문구역 제2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			
재개발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개발사업 시행			
변경 인가하고 동법제16조 및 동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			
1986. 5.			
서울특별시 장			
가. 변경 내용			
(제1안 2항 "가"호 이기시행)			
나. 변경 사유			
(제1안 2항 "나"호 이기시행)			
(제3안)	인	가	증 (안)
남대문구역 제2지구 재개발사업 시행 변경 인가			
1. 서울특별시 고시제628호(84.11.1)로 사업 시행 인가된 남대문구역			
제2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			
개발사업 시행 변경 인가한다			
1986. 5.			
서울특별시 장			
가. 변경 내용			
(제1안 2항 "가"호 이기시행)			
나. 변경 사유			
(제1안 2항 "나"호 이기시행)			
(제4안)			
수신 중구 남창동 52-3 남정객발(주) 대표이사 하귀용			